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7. 15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,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명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이○춘	1973.7.7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①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②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 (3년간 재참여 제한)	폐문부재 연락두절	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2길 51, 501동 1601호

4. 공고기간: 2025.12.03. ~ 2025.12.17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순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김종구(Tel. 061-720-913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